

검 토 보 고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0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- 그간 필요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시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기구 관련 조례가 다양하게 운용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에 따라
-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개편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각종 행정기구 관련조례(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,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,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,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,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)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함.
- 시본청 실·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제3조)
-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제8조)
-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제11조)
-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제14조)
- 출장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제17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 15875호, 1998년 8월 31일)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·제정하려는 것임.
-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써 지침의 내용을 보면,
 - 조직(기구)관련 통합조례와 정원조례로 대별하여 조례를 정비토록 하되 조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전제와 균형 확보측면에서 조직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,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,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구분·운용하며,
 - 과장중심의 기능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「제」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농촌진흥 관련기구를 농정여건 변화등 시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.
- 또한 동 조례안은 지난 25회 임시회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심의·의결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 금번 제정시 변경되는 사항은 당초 조례안에서 실·과별로 분장사무를 규정하던 것을 실·국별로 규정하고 기구관련 조례인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,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,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,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,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장·절로 구분하여 통합하고 있는 바,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